

미국은 국세청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면세혜택과 사후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미국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투명성 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성직자의 자발적 급여 공개와 세금 납부도 미국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다른 면세단체들과 달리 교회에 소속된 성직자(정규직, 임시직 포함)는 급여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일부 성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급여를 신고하고 있으며, 이때 교회는 반드시 미국세청에 급여와 원천징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가면서

미국은 국세청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면세혜택과 사후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미국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투명성 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기부 투명성 제도를 2008년도에 제도화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14년 1월 24일 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자산 5억원 이상 수입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공시양식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개정 예정인 표준공시양식이 적용되면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를 포함한 한국의 종교단체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두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하고 2004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상임이사, 2008년부터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희망나눔 나눔 정책네트워크 위원이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깨끗한 교회재정의 실제적 적용

-100주년기념교회-

윤병환 (100주년 기념교회 사무장)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이하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46)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추계로 235)의 법적 소유주인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재단'이 두 성지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 기독교선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고자 2005년 7월 10일 창립한 교회로, 독립교단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에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46(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다.

1. 재정집행 및 보고 원칙(근거조항)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7조 2항에 보면 현금의 50%는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교회 밖을 위해 사용토록 (이재철 목사의 '새신자반' p.293-295 참고) 재정집행의 대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담임목회자 소신 차원을 넘어 교회 창립정신의 하나로 정관에 공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교회 홈페이지 <http://100church.org> 교회소개>교회정관 참조)

이러 정관 제7조 3항에 따르면 재정보고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바 매월 첫째 주일에 전월의 재정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교인에게 1월 단위까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초 열리는 상임위원회(전임교역자 및 봉사팀장들로 구성된 의결기구로 일반교회의 당회 성격과 유사하나 차이가 있음)에 서면으로 상정한 후 의견을 거쳐 다음 주일에 각 교인들에게 인쇄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란에 상시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2005년 7월 창립 이래로 매월 공시해오고 있다.

2. 재정공개 이유와 목적

역대상 29장 14절(다윗의 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헌금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애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재정공개는 기본적으로는 광의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보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협의로는 모든 교인들이 교회 살림살이를 충분히 이해하여 헌금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비본질적인 사항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 나아가 할 본연의 길(道), 즉 각기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만 대대히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재정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1) 수입 : 헌금기명주의

매주일 헌금을 집계하여 다음주일 주보 후면에 상품권 및 외화를 포함한 헌금상세내역을 1차 공개한 후, 다음달 초 통장별 잔액이 포함된 월 단위 결산보고서를 작성, 2차 공개한다. 아울러 개인별 헌금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되 연말정산이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현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동일번호의 중복성 문제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등에 따라 교인등록번호 등 다른 대안을 강구 중에 있다.

(2) 지출 : 완전공개주의

공개대상으로는 교인들은 물론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공개함으로써 제한된 소수 내부감사자(현재 금감원 소속의 감사를 비롯하여 1명의 세무사와 2명의 공인회계사로 감사팀이 구성되어 있음)에 의한 감사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세부 결재과정을 살펴보면 각 봉사팀장(현재 68개팀)이 지출결의서를 작성, 첫번째 결재란에 사인 후 사무국에 제출하면 사무장이 지출내용을 확인한 후 두번째 결재란에 사인하고 마지막으로 재정팀장이 최종 결재란에 사인하면 자금이 집행된다. 참고로 결재라인상에서 교역자는 일체 배제되는데 이는 재정에 관하여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말씀전달과 양육에 보다 집중토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상호 관련업무의 이해와 상황파악을 위해 담당교역자 및 선임교역자의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존재한다.

세부 지출기준을 보면 교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재정운영에 관한 규정(2014. 1. 9. 2차 개정)]에 근거하여 단일거래 기준 200만원 이하의 지출은 자체 판단(필요시 담당교역자 의견 참고)하여 팀장 재량 하에 집행하고 200만원 초과 지출은 지출규모에 따라 품의서 작성과 상임위 승인 및 3곳 이상의 비교견적을 통한 계약 체결 등 객관적 투명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참고로 100주년기념교회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데 이는 천수답을 경작하는 농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가겠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또한 교역자, 직원 및 봉사팀장 등 교회 행정에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적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아울러 모든 거래는 부가세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지출증빙서류 또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간이영수증은 법적 한도인 3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모든 교직원들은 교회 창립 초기부터 근로자에 준하여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 오고 있는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에도 다소 비켜서 있다. 그러나 엄격한 지출증빙 요구로 인해 다수의 비전문가로 이

루어진 선의의 봉사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지역 영세상인들과의 거래가 어렵게 되어 지역민들과 동고동락해야 하는 교회외 또 다른 의무를 등한시할 우려도 상존하여 세법 등 국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대응해 가고 있다.

자금운용은 안전성 우선의 원칙에 입각, 기초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위험자산에도 투자할 수 없는 바 제1금융권 내 확정된 정기예금 외에는 일절 다른 운용수단을 배제하고 있다.

(3) 회계감사 및 보고

매주일 단위 감사팀이 통장거래내역과 지출결의서를 일일이 비교, 대조, 감사한 후 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월 결산보고서와 함께 상임위원회에 상정,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정관 제9조 2항) 분기별, 연도별 보고서도 별도로 전년 대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상품권도 수입/지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 세부 사용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주간단위 감사를 하는 이유는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회계 및 자금운용 실무자에 의한 금전사과 환경을 사전에 근절하는데 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일반교인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월 단위 결산보고서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단식부기에 의해 작성하는 반면, 연말 결산재무제표는 자산운용현황과 손익현황 및 현금흐름 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하고 있다. 또한 연말결산 감사보고서는 계정과목별 마감을 기초로 작성된 감사조서를 토대로 작성, 보고한다.



윤병환 현재 100주년기념교회 사무장으로 섬기고 있다.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 경영대와 서울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증권사, 투신사, 연금 등에서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로 활동하였다.

4. 재정공개 의 장 단점

(1) 장점

모든 정보를, 모든 교인에게, 모든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담임목회자 또는 재정담당자의 독단적 자금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교인들의 헌금 사용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를 높여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근절시키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너무 세부적인 정보까지 제공하다 보니 사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는데다 헌금 사용내역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교회행정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단, 불우이웃돕기나 선교사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한 창의적 접근지역의 전도 등 상대방을 위한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을 미기재하는 방법 등 부분적 대처방안으로 보완하고 있다.

5. 맺음말

결산보고서의 완전공개를 통한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임목회자의 재정공개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함께 회계책임자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 및 원천회계자료에 대한 최대한 가공 자체 등azzi 지켜야 할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결과들을 보기 원한다면 100주년기념교회 홈페이지에 접속, 안내 및 공지사항 코너를 둘러보면 된다. 교회정관, 주보, 월별 결산보고서, 분기별 보고서, 연말 결산보고서, 연도별보고서의 실제 내용을 가감 없이 들여다 볼 수 있다. 최근 자료로 [2013년도 100주년기념교회 연간결산 및 감사보고서]도 2013년 12월호 결산자료에 이어 게시되어 있어 100주년기념교회 재정보고의 현 수준을 누구나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